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11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8. 11. 19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. 11. 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(2018. 12. 11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박한호

가. 제안이유

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정의(제1조~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, 기본원칙 등(제3조~제5조)
- 3) 아동고려 공공이용시설 설치 및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(제6, 7조)
- 4) 아동 건강증진, 아동 교육여가 문화생활(제8, 9조)
- 5) 아동참여 보장, 아동권리 모니터링, 아동영향평가 실시(제10~12조)
- 6)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(제13조)
- 7)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(제14조~22조)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- 이견 제정 조례안 “아동친화도시 조성” 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우리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(참고자료 1)
- 참고로,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성북구가 2011년 조례를 제정하는 등 19개구,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전남 순천시, 전북 완주군 등 52개 등 전국에 총 72개 시·군·구가 우리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
- 이견 조례안은 본칙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다른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례로서의 구성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아울러, 조례안의 용어와 정의 및 각 조문별 내용 등을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와 비교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, 이견 조례 제정후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해 제출된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“아동친화도시 조성” 단위사업으로 8690만원 편성, 기타 연관사업인 “아동보호 및 권리신장” 정책사업으로 195억 7667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따라서, 예산의 확보와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무엇보다, 향후 이견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집행부는 “헌법”과 “유엔아동 권리 협약” 및 “아동복지법”의 정신과 취지를 살려 한층 더 향상된 우리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또한, 조례 제정후 사업추진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,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기적시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